안산시 시민옴부즈만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발 간 등 록 번 호
71-3930000-000198-10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 영 상 황 보 고 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발 간 등 록 번 호
71-3930000-000198-10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 영 상 황 보 고 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CONTENT

Ⅰ. 총 평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 07
2. 2021년도 시민옴부즈만 활동 개요 ····· 08
3. 2022년 시민옴부즈만 운영 방향 ····· 10

Ⅱ.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의 개념 ····· 15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15
3.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징과 효용성 ····· 15
4. 옴부즈만 설립·운영의 4대 원칙 ····· 16

Ⅲ.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 ····· 21
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 21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사항 ····· 22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 23

Ⅳ. 시민 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 29
2. 옴부즈만 고충민원 등 접수·처리 명세 ····· 29
3. 고충민원 주요 처리 사례 ····· 31
   - 가. 인용 사례 ····· 31
   - 나. 심의안내(상담종결) 사례 ····· 58
   - 다. 기각 사례 ····· 62

Ⅴ. 부 록

1. 시민옴부즈만 홍보 현황 ····· 69
2. 시민옴부즈만 활동 현황 ····· 70

Ⅵ. 관련 규정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9
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82
3. 안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86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 90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 115

Ⅰ

총 평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2. 2021년도 시민옴부즈만 활동 개요
3. 2022년 시민옴부즈만 운영 방향

Ⅰ. 총 평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안산시는 면적 156.332㎢에 인구 70만 138명(내국인은 65만 2,726명, 등록외국인은 4만 7,412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행정조직은 6국 41과, 3직속기관, 7사업소, 2구 25동으로 이루어져 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주민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시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안산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 및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2020. 7. 1. 옴부즈만 2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개소한 후, 2020. 10. 5. 옴부즈만 1명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총 3명의 시민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이르러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3명인 옴부즈만 정원을 5명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 7.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개소한 이후, 시민옴부즈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불신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당해 처리부서 또는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객관성 확보가 다소 미흡했으나, 이를 제3자의 입장인 시민옴부즈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불신 완화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면책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법적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처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대외적으로는 2021. 11. 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산시시민옴부즈만 간 고충민원처리 협력방안 추진계획」에 합의하여 안산시 소관 고충민원에 대한 분업처리 협력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시민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단으로 위촉되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평가업무와 고충민원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안산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상담에 성심성의껏 임할 계획이오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다른 시·도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2. 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2. 2021년도 시민옴부즈만 활동 개요

가. 민원의 종류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법정민원[1], 질의민원[2], 건의민원[3], 기타민원[4] 등 일반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나. 안산시의 민원 접수·처리 현황

안산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새올상담민원창구)와 안산시민원상담콜센터, 유기한민원창구를 개설·운용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전자정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안산시의 홈페이지 등 민원신고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안산시민원상담콜센터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으로부터의 문의·신고·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으로 2012. 8. 8.부터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중무휴로 운영[5]하고 있다.

유기한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안산시 민원 처리 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구 즉결 민원을 제외한 1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허가·승인·면허·인가·등록·확인 등)으로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접수·처리한다.

안산시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사항은 2016년도에 593,124건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41% 늘어난 837,870건에 이른다.

---

1)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 등을 신청(건축허가신청 등)하거나 장부·대장에 등록·등재를 신청(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 등)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인감증명서 발급 등)하는 민원
2) 법령·제도 등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단순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5) 이용시간: 평일은 08:00~19:00, 주말·공휴일: 09:00~18:00
이용방법: 전화상담(1666-1234, 031-430-8100), SNS상담(http//twitter.com/ansan-minwon, http//www.facebook.com/ansanminwon)

연도별 민원 접수·처리결과 (단위: 건)

구 분	계	국민신문고 (새올상담민원)	민원콜센터	유기한민원
합 계	**4,035,024**	436,264	2,725,561	873,199
2021년	**837,870 (141%)**	112,767	576,611	148,492
2020년	**723,241 (121%)**	111,045	475,894	136,302
2019년	**657,942 (110%)**	107,639	408,147	142,156
2018년	**617,712 (104%)**	45,621	410,759	161,332
2017년	**605,135 (102%)**	30,973	430,381	143,781
2016년	**593,124 (100%)**	28,219	423,769	141,136

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안산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 7. 1. 옴부즈만 2명으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개소한 이래 2020. 10. 5. 옴부즈만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3명의 시민옴부즈만이 활동 중이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1. 1. 1.부터 12. 31.까지 전년도 이월 고충민원 4건과 2021년도에 접수한 고충민원 44건 등 계 48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그 중 44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4건은 처리 중이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접수건수		처리완료								처 리 중
		소계	시정 권고	조정	의견 표명	기각	각하	이송	상담 종결	
합 계	**48**	**44**	1	5	10	9	1	2	16	**4**
전년도 이월	**4**	**4**		1	1	2				
2021년 접수	**44**	**40**	1	4	9	7	1	2	16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만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 그리고 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민원 등 반복성, 시급성, 중대성이 있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불신 완화와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3. 2022년 시민옴부즈만 운영 방향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 7. 1. 개소한 후, 시민들과 안산시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만의 필요성과 역할을 홍보하고 시민들에 대한 열린 소통창구로서의 정착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1년도에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그 목표로 설정하고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외연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이를 위하여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실천하여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발굴하여 해소하였다.

현재 시민옴부즈만 3명이 모든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민원을 듣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안산시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과 반복적이고 시급성이 있으며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을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고충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더욱 섬세하고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옴부즈만협의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산시시민옴부즈만이 한층 더 시민들과 함께 친화하고 발전되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3.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징과 효용성
4. 옴부즈만 설립·운영의 4대 원칙

Ⅱ.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의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의회에 의해 임명된 자로서,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고충민원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및 의견표명, 화해, 조정, 기각, 각하,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불신 완화와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ombudsman)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으로 그 당시 옴부즈만(ombudsman)은 의회의 대리인(agent)을 의미하였다.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재량의 영역이 복잡·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민원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옴부즈만은 민원인 당사자 또는 행정처리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행정의 수용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21년 10월 현재에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와 54개 기초자치단체(안산, 화성, 성남, 수원 등)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징과 효용성

가. 옴부즈만의 기능

● **민원 상담 및 권익구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고충민원(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을 제기하면 옴부즈만은 적절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그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

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함으로써 시민의 눈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 **갈등조정 기능**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시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법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대하여도 비용의 부담 없이 조사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갈등조정 기능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행정개혁 기능**

행정업무는 선례를 존중하는 속성이 있어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에도 관행이 변화되기 어려우나, 옴부즈만이 시민들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발의하고 이를 조사한 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관행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개혁 및 제도개선 기능을 할 수 있다.

나. 옴부즈만의 특징

●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다.

●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선임함으로써 그 처리 결과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보다 간편하며, 민원인 입장에서 저비용의 해결 수단으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다. 옴부즈만의 효용성

● 옴부즈만은 행정업무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행위를 검토하여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옴부즈만이 내린 판단에 대하여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옴부즈만제도는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부당한 문제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옴부즈만의 처리 권한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에 그치지만, 그 판단결과가 민원인과 해당 기관에 통보될 뿐만 아니라 연간 처리 실적의 형태로 의회 및 시장에게 보고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처리 단계부터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옴부즈만 설립·운영의 4대 원칙

● 독립성(Independence): 기구의 독립, 기능의 독립, 인적 독립

● 공정성(Impartiality): 법, 규칙, 정책 등이 적정한지 여부, 그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어야 함(민원인의 대변자도 아니고, 정부기관의 보호자도 아니다)

● 비밀보호(Confidentiality): 옴부즈만은 통상적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비밀 보호 의무가 있음

● 신뢰성 있는 심리 절차(Credible Review Process): 옴부즈만은 법, 행정,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이슈를 분석·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관할권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연례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선임기관 및 대중에 전년도 활동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Ⅲ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
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사항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Ⅲ.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

가. 도입 배경

안산시는 대민행정 처리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민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게 되었다.

나. 추진 경과

2019. 5. 2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본방안 수립
2019. 11.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2317호)
2020. 1. 2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 제1248호)
2020. 3. 1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1차)
2020. 4.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 선정(1차)
2020. 4. 29.	안산시의회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제262회 임시회)
2020. 6. 2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2차)
2020. 7.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업무개시(이영갑·함정규 위원)
2020. 7. 17.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 선정(2차)
2020. 9. 18.	안산시의회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제265회 임시회)
2020.10. 5.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추가 위촉 및 업무개시(김성환 위원)
2021.11. 10.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위원 정수가 3인에서 5인으로 증원됨(조례 제2569호)
2022. 1. 5.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위원 자격 요건 명확화(조례 제2588호)

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역할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안산시 또는 안산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며,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 위 원 정 수: 5명(안산시시민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위원정수는 2021. 7. 1. 출범 당시에는 3명이었으나, 2021. 11. 10. 조례개정에 따라 5명으로 증원 됨

- 임　　기: 2년, 1회 연임 가능(위 조례 제4조 제3항)
- 지원인력: 안산시 소속 공무원 1명(위 조례 제15조)

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현황(2021. 12. 31. 현재)

	이 영 갑 시민옴부즈만(대표: 2020.7.1.~2022.6.30.) ◎ 전, 감사원 감사관 ◎ 전, 안산시 감사관
	함 정 규 시민옴부즈만(부대표: 2020.7.1.~2022.6.30.) ◎ 전, 상하이총영사관 부총영사 ◎ 현,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청렴교육기본강사
	김 성 환 시민옴부즈만(2020.10.5.~2022.10.4.) ◎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등 (고위공무원) ◎ 전,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경쟁협력관)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사항

가.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시민옴부즈만의 기능(조례 제3조)

- 주민들의 권익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안산시장 및 안산시의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다.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대상기관(조례 제2조 제3호)

● 안산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라. 시민옴부즈만의 권한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같은 조례 제3조 제1호)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서면자료 제출 요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가. 고충민원 신청 대상

안산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고충민원 신청방법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실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
  - 방문(우편)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우편번호 15335)
  - 문의 전화 : (031)481-2682(대표) / (031)369-1580, 1581, 1595
  - 팩 스 : (031)481-3204
  - 이 메 일 : ansanombudsman@korea.kr
● 고충민원서 서식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할 수 있음
  ※ 안산시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처리안내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자격증명 서류를 첨부한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서식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다. 고충민원의 처리

● 처리 기간: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 처리 절차도

● 고충민원의 조사중지 또는 종결

- 옴부즈만이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 옴부즈만이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 신청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서의 보완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회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된 자료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Ⅳ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2. 옴부즈만 고충민원 등 접수·처리 명세
3. 고충민원 주요 처리 사례

가. 인용 사례

나. 심의안내(상담종결) 사례

다. 기각 사례

Ⅳ.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1. 1. 1.부터 12. 31.까지 전년도 이월 고충민원 4건과 2021년도에 접수한 고충민원 44건 등 계 48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그 중 44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4건은 처리 중이다.

◎ **고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접수건수		처리완료								처리 중
		소계	시정 권고	조정	의견 표명	기각	각하	이송	상담 종결	
합 계	**48**	**44**	1	5	10	9	1	2	16	**4**
전년도 이월	**4**	**4**		1	1	2				
2021년 접수	**44**	**40**	1	4	9	7	1	2	16	**4**

2.옴부즈만 고충민원 등 접수·처리 명세

◎ **전년도 이월 고충민원 접수·처리 명세**

일련번호	접수일자 (2020년)	해당 부서	제 목	처리결과
20-1	11. 13.	교통 정책과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	의견표명
2	12. 15.	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사동 90블럭 복합용지 신축공사 중지 철회 요청	조정
3	12. 24.	상록구 민원봉사과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불충분 시정요구	기각
4	12. 24.	상록구 도시주택과	옥외 간판 감독소홀 및 소음으로 인한 이명 등 피해 배상요구	기각

◎ **2021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명세**

일련번호	접수일자 (2021년)	해당 부서	제 목	처리결과
21-1	1. 19.	교통정책과	중앙대로 공항버스, 관광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요청	이송
2	1. 20.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내 원상복구 시정명령 집행유예 요청	의견표명
3	2. 03.	도시계획과	월피동 △△ 자동차관련시설의 부속용도(차고) 건축허가 요청	기각
4	3. 09.	위생정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취소 요구	기각
5	3. 22.	복지정책과	무주택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 기준 변경 요구	기각
6	3. 30.	체육 진흥과	복합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요청	의견표명
7	3. 22.	도시계획과	시 소유 구거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관련	이송
8	4. 19.	기업지원과	별망로 555 울타리 철거 요청	상담종결
9	4. 19.	공원과	석수골 역세권 준공 지연에 따른 안산메트로타운○○아파트 입주자 및 ◎◎㈜의 민원 해소방안 질의	의견표명

일련번호	접수일자(2021년)	해당 부서	제 목	처리결과
10	4. 23.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건건동 ○○마을 지역교통망 개선 요청	의견표명
11	5. 11.	단원구 도로교통과	도로점용허가 시에 적용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적정여부 및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요청	조정, 제도개선
12	5. 13.	건설도로과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	조정, 제도개선
13	5. 13.	건설도로과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	조정, 제도개선
14	5. 13.	건설도로과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	조정, 제도개선
15	5. 21.	상록구 도로교통과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주차장입구 도로점용허가 요구	의견표명
16	6. 2.	단원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부동산 중개업 관리 담당자 소극행정으로 인한 고충	상담종결
17	6. 11.	건설도로과 단원구 도로교통과	○○아파트단지 내 자동차 소음 공해 해소 요청	상담종결
18	7. 22.	주택과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직무대행)의 정보공개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조치지연 시정요구	상담종결
19	7. 29.	도시계획과 상록구 민원봉사과 도시주택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지번 변경 요구	상담종결
20	7. 30.	주택과	재건축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시정요구	각하
21	7. 30.	주택과	재건축조합 설립승인신청관련 정보 공개 요구	의견표명
22	7. 30.	주택과	재건축 동의 철회의 효력에 대한 관원질의 철회 및 조속 회신 요구	기각
23	8. 5.	차량등록 사업소	특정경유자동차 과태료 감면 요청	의견표명
24	8. 5.	녹지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공사(신시화분기)로 인한 공장용지 사용(공장건축)의 어려움 해소바람	기각
25	8. 10.	대부개발과	불법매설 하수관로 원상복구 요청	의견표명
26	8. 18.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 부당 부과 취소 요청	시정권고
27	9. 3.	주택과	주택재건축조합 위법 운영 중지요청	상담종결
28	9. 6.	상록구 세무과	주택건설사업자 일몰기한 이후 취득한 공동주택 감면 관련	기각
29	10. 6.	건설도로과	팔곡일반산업단지 인근 신축예정 공장부지 진출입도로 개설 요구	상담종결
30	10. 8.	도시계획과 단원구 민원봉사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요청	의견표명
31	10. 21.	도시계획과	하천부지 활용 농사용 진입로 개설 요청	기각
32	11. 15.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 과다 부과 감면 요청	진행 중
33	11. 23.	주택과	재건축 추진관련 동의 철회의 효력에 대한 신속한 답변 요구	상담종결
34	11. 25.	주택과	재건축 추진관련 건축심의의 동의철회 반영여부 확인 요구	상담종결
35	12. 15.	단원구 도시주택과	자전거도로의 사면인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검토	진행 중

일련번호	접수일자(2021년)	해당 부서	제 목	처리결과
36	12. 23.	주택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방법 위반에 대한 소극적 행정조치 시정 요청	진행 중
37	12. 23.	상록구 도시주택과	○○꽃마을 비닐하우스에 대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판매시설 주장에 대한 의견 요청	진행 중
38	4. 13.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39번국도 내 교차로 설치 및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 요구	상담종결
39	4. 14.	혁신법무과	○○전기 철물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전기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상담종결
40	5. 10.	시민소통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산정기준	상담종결
41	6. 21.	도시계획과	월피동 관내 자동차정류장 용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상담종결
42	7. 19.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서비스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누수피해 보상금 요구	상담종결
43	7. 26.	농업정책과	법원 경매물건 명의이전 불허 취소요청 관련 민원	상담종결
44	9. 24.	감사관실	고압가스 관리부실에 대한 민원 자문	상담종결

3. 고충민원 주요 처리 사례

가. 인용 사례

(1) 이행강제금 부당 부과 취소 요청 (시정권고)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 일반음식점 ○○가든(신고번호 제00000호, 대표자 ★★★)과 개울옆 야장(수암동 ▲▲ 구거, 수암동 ◇◇ 및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400평을 2016. 7. 21.부터 신청인의 아들 명의(★★★)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4. 10.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넘겨주었는데도

- 안산시(도시계획과)는 본인의 아들이 위 일반음식점 영업을 2017. 4. 10. 중단하였는데도 본인(☆☆☆)에게 위 야장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은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 11. 7. 이행강제금 373,000원을 부과하였고, 2019. 12. 12. 이행강제금 391,000원을 부과하는 등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계 764,000원을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번지 영업허가 상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해당 위반행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일반주거지역인 같은 구 수암동 △△번지 일반음식점 영업과 개발제한구역인 같은 구 수암동 ▲▲번지가 연계되어 운영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실 관계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안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해당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요건은 필수 요건에 해당된다.

□ 일반음식점(수암길 △△, 1층) 영업 현황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기간
◎◎가든	○○○	수암길 △△, 1층	2014. 4. 23. ~ 2014. 12. 24.
◎◎가든	◎◎◎	〃	2014. 12. 24. ~ 2016. 5. 2.
○○가든	◇◇◇	〃	2016. 5. 2. ~ 2016. 7. 21.
○○가든	**★★★**	〃	**2016. 7. 21. ~ 2017. 4. 10.**
○○가든	◈◈◈	〃	2017. 4. 10. ~ 2017. 11. 23.
●●●식당	◐◐◐	〃	2017. 11. 23. ~ 현재까지

위 ★★★의 대리인 ☆☆☆은 일반음식점 ○○가든을 2016. 7. 21.부터 2017. 4. 10.까지 운영하였다.

□ 일반음식점(수암길 △△, 1층) 위법행위 조사 경위

조사 일자	확 인 및 조치내용	조 사 당 시 음식점 운영자	비 고
2014. 7. 11.	위법 행위 현장 확인	◎◎가든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 2015. 3. 9. 원상복구 확인
2015. 6. 2.	불법 확인	◎◎가든 ◎◎◎	원상복구 약속 후 미점검
2016. 9. 28.	위반 사항 재 확 인	○○가든 ★ ★ ★	2017. 4. 10. ☆☆☆에게 이행강제금 326,000원 부과
2018. 9. 2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식당 ◐◐◐	2018. 11. 7. ☆☆☆에게 373,000원 부과
2019. 8. 19. 2019. 10. 28.	이행 강제금 부 과 계 고	●●●식당 ◐◐◐	2019. 12. 12. ☆☆☆에게 이행강제금 391,000원 부과
2020. 6. 30.	추가적발 및 자인서 제출	●●●식당 ◐◐◐	상록구 수암동 △△ 토지소유주 원상복구

(라) 판 단

□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2건 계 764,00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든(대표자 ★★★)은 2017. 4. 10.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일반음식점 실제 운영자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서 규정한 해당행위자(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안산시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2건 계 764,000원은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 이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경위

- 안산시는 2014. 7. 7.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 구거와 같은 동 ◇◇ 답(소유자 ◐◐◐)에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 등을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당시 점유자는 ⦿⦿개울식당(대표자 ◑◑◑)이었다.

- 위법행위 조사서

행 위 자	행위 일시	행위내용	사 용 용 도	구 조
⦿⦿개울식당 (대표자◐◐◐)	2014. 7. 7.	형질변경	식당부속시설 30㎡	냉장고및집기류
		신 축	원두막 평상 100㎡	목재 평상
		신 축	야 외 식 당 60㎡	평상설치(목재)
○ ○ 가 든 (점유자 ☆☆☆)	2016. 9. 28.	형질변경	식당부속시설 30㎡	냉장고및집기류
		신 축	원두막 평상 100㎡	목재 평상
		신 축	야 외 식 당 60㎡	평상설치(목재)
◐◐◐ (수암동 △△ 소유자)	2016. 9. 28.	신 축	음식점 (창고) 20㎡	철파이프
	2016. 9. 28.	신 축	음식점 (화장실) 4㎡	판넬
	2020. 6. 30.	신 축	음식점 (창고) 15㎡	철파이프

- 2015. 3. 9. 원상복구 확인 후, 불법사항을 추가 확인한 시점은 2015. 6. 2.자로 당시에는 안산시 상록구 수암길 △△, 1층에는 ◎◎가든(대표자 ○○○)이 영업 중이었으므로 위 점유자 ☆☆☆을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직접·최초행위자로 볼 수 없다.

- 숲속개울가든 운영자 ☆☆☆은 ⦿⦿개울식당(대표자 ◐◐◐)이 사용하던 "식당부속시설 30㎡, 원두막평상 100㎡, 야외식당 60㎡"(이하 '위반시설물'이라 한다)를 2016. 7. 21.부터 2017. 4. 10.까지 약 9개월간 사용(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 안산시는 위 ☆☆☆에게 2018. 9. 28. 등기우편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같은 해 10. 18. 공시송달하였고, 2019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도 같은 해 11. 2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위를 볼 때, 위 ☆☆☆이 위반시설물을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안산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건 ☆☆☆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도 위반시설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확인(자인서 등)이 필요하다.

- 따라서 안산시가 2018년도와 2019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위 위반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이건 ☆☆☆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도 계속“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행위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가든(대표자 ★★★)의 운영자 ☆☆☆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서 규정한 해당행위자(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을 2018년 및 2019년도 이행강제금 납부대상자로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마)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시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서 규정한 행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해당행위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 부과처분으로 인정된다는 법적 근거(판례, 해설, 예규 등)도 없다.

- 더욱이 안산시는 위 ☆☆☆에게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등기우편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옴에 따라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이 시정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안산시 상록구 수암길 △△, 1층의 영업허가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해당 위반행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이건 ☆☆☆은 2016. 7. 21. ⦿⦿개울식당(대표자 ◐◐◐)이 사용하던 위반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다가 2017. 4. 10. 일반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런데 2018년도 및 2019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위 ☆☆☆에게 이행강제금부과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옴에 따라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이 위반시설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안산시는 위 위반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위 ☆☆☆이 2018년도와 2019년도 중에 위반시설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확인(자인서 징구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더욱이 안산시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행위자인 ⦿⦿개울식당(대표자 ◐◐◐)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일반주거지역인 같은 구 수암길 △△, 1층 일반음식점 영업과 개발제한구역인 같은 구 수암동 ▲▲번지가 연계되어 운영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위 ☆☆☆이 위반시설물을 영업을 종료한 2017. 4. 10.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확인(자인서 등)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근거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바) 주 문(시정권고)

● 안산시(도시계획과)는 신청인 ☆☆☆에게 2018. 11. 7. 부과한 이행강제금 373,000원과 2019. 12. 12. 부과한 이행강제금 391,000원 등 2건 계 7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시정권고)

●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시민옴부즈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이행강제금 2건 계 7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조정, 제도개선)

(가) 민원 요지

● 안산시 단원구는 2021. 5. 3. ○○태양광㈜ 외 2개 업체에 대하여 관내 초지동 △△ 일원 자전거도로에"시화호 자전거도로 그늘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 42,597,500원을 부과하였다.

-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명세

회사별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원)					
	일자	면 적 (㎡)	일자	가중평균가격	점용요율	기간	감면	금 액
○ ○ 태양광	21.5.3.	2,482.88	5.3.	270,000	0.05	7/12	1/2	9,776,300
◎ ◎ 태양광	21.5.3.	2,482.88	5.3.	692,411	0.05	7/12	1/2	25,071,200
● ● 태양광	21.5.3.	2,482.88	5.3.	214,038	0.05	7/12	1/2	7,750,000
합 계	-	7,448.64	-	-	-	-	-	42,597,500

● 이에 대하여 ○○태양광㈜ 외 2개 업체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제1항 "지중배전용기기함 및 제설용구함"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1,250원의 점용료(모듈 또는 기둥 1개당)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의 50%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 2021. 4. 20.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는"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신"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실 관계

□ 이건 사업 추진 경과

● 안산시(에너지정책과)는 2020. 9. 24.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사업 제안 공모 수정공고"를 하였는바

- 공고문에 첨부된“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사업 제안 공모 수정 지침서”제3항 ‘다’호 ‘3)-나)’ 및‘4)-나)’호에 따르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부서인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라고 공고하였다.

● 또한 안산시장과 낙찰업체인 광명전기(회장 ○○○, ○○○)는 2020. 12. 10.「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 양해각서 제4조(신의, 성실의 의무)에서“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모의 지침과 제안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 후, 2021. 5. 3.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제3조에서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3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명시하였다.

□ 도로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도로법」관련 규정

● 「도로법」제66조 제4항에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한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 이건 단원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자전거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태양광(열)발전소를 명시하고 있으나

- 태양광(열)발전소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해서는「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

●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이건 단원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자전거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도로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 1]“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태양광(열)발전소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내용과 같음)

● 따라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1]“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건 태양광(열)발전소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보면

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로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제1호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열발전시설을 제외한 채,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등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점용료 산정기준은 동일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제1항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중 “지중배전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등”으로 보아 점용단위 1개당 1년 단위로 1,250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점용단위를 기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모듈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점용료 산정기준”제1호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에서 태양광발전시설과 태양열발전시설을 직접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전용면적 1㎡당 1년 단위로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전용면적을 모듈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모듈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볼 것인지, 또는 기둥면적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③ 제10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설설치기간 중에는 전용면적 1㎡당 1년 단위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이건 태양광(열)발전소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 ○○태양광㈜ 외 2개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의 적정성 검토

● 이건 도로점용료 부과의 긍정적 요인

①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태양광(열)발전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태양광(열)발전소는 안산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상 제1항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1항 세부항목에 태양광(열)발전소가 누락되었으므로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문리해석으로 적절하다.

②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시(2021. 4. 20. 도로관리과 2086호)에 따르면 태양광(열)발전소는 대체로“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로 분류한 것으로 태양광(열)발전시설의 형태, 점용방법 등을 종합 검토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답변으로 비추어 볼 때,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의 배경(2021. 3. 23. 경기도 도로안전과-5377호, 2021. 2. 23. 고양시 덕양구 안전건설과-4387호)이 도로 법면을 태양광(열)발전시설 부지로 점용허가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용권을 보장하는데 반하여, 안산시의 경우는 자전거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본래의 기능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고

- 특히, 일반 태양광발전소의 건설비용 대비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500㎾ 시공비 = 550백만 원 : 850백만 원, 폭4m기준 M당 단가 = 920천 원: 1,423천 원)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도로안전 보험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토부의 질의회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건 도로점용료 부과의 부정적 요인**

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 7. 31.“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이의 의견표명”에서 태양광(열)발전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전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도로점용료 증가로 인한 경제성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 제1호의 점용료 산정기준 나열순서를 고려하여 “지중배전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등”으로 보아 점용단위 1개당 1년 단위로 1,250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위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독점적인 점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그늘막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시민들에게 그늘막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토지가격에 0.05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③「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호에 따르면 태양광(열)발전시설은 점용단위 1개당 1년 단위로 1,550원을 부과하고 있다.

④ 경기도 의견(2021. 3. 23. 도로안전과-5377호)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은「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은 동일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상시설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국토교통부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2018. 12. 13.)
국토교통부는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항목(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점용료 과다로 사업을 보류하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도로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천명한바 있다.

⑥ 2018. 5. 10. 경제관계장관회의 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으로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하는 내용의「신재생에너지법」 및「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방침을 상정한바 있다.

(라) 판 단

● 현재,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 1]“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태양광(열)발전소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된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이건 단원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자전거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 「도로법」 제66조 제4항에서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에 관한 도로점용료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국도가 아닌 도로의 점용료에 대하여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용인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2013. 10. 17. 대법원 2013두4125 판결)는 측면을 고려할 때,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태양광(열)발전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관련 규정을 안산시 실정에 맞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

- 그러나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태양광(열)발전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 안산시장이 제반 안산시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도로법」 제66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로 분류한 것으로 태양광(열)발전시설의 형태, 점용방법 등을 종합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비추어 볼 때도, 안산시장이 현행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현황)

(마) 결 론(조정, 제도개선)

● 단원구청장으로 하여금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사업 제안 공모 수정 지침서” 제3항 ‘다’호에 따라 안산시 건설도로과에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1]“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해석한 내용을 ○○태양광주식회사 외 2개 업체와 협의하여 도로점용료를 최종 확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단원구청장과 해당업체는 조정서에 합의함으로써 태양광그늘막설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제도개선 필요: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독점적 사용권이 보장되는 태양광(열)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면적기준 등을 적용하고, 독점적 사용권이 보장되지 않는 태양광(열)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3) 사동 90블럭 복합용지 신축공사 중지 철회 요청 (조정)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안산시 건축디자인과로부터 2020. 5. 7.'안산사동90블럭 복합용지 신축공사'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8.부터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관련부서(녹지과)의 공사장 인접토지(면적: 948 ㎡, 공유재산) 사용 불허가로 인해 같은 해 11. 18.부터 공사가 중지되는 등 피해가 많으니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5. 7. 안산시 건축디자인과로부터 '안산사동90블럭 복합용지 신축공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8.부터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 2020. 11. 18. 건축디자인과로부터 갑자기 공사 중지 통보(녹지과와의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를 받고 현장 터파기공사 등이 중지되어 경제적 피해(일평균: 300-400만원의 피해 발생)가 가중되고 있어

● 신청인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2020. 12. 30. 건축디자인과에 별도의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한 민원조정위는 2021. 1. 11. 동 이의신청을 기각 처리하였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은 공사 특성상 동계 기간(3개월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터파기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피신청인 주장

● 안산시 건축디자인과는 시민옴부즈만이 공사 중지 관련 민원 발생경위 등을 질의한데 대하여 2020. 12. 29.'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답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건축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2020. 5. 7. '안산 사동 90블럭 복합용지 신축공사'건축허가를 하였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토지사용허가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접토지(면적: 948㎡,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사용허가는 건축주가 관련부서인 녹지과로부터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편, 안산시 녹지과도 2020. 12. 23.'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을 통해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이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미협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것이며
- 신청인이 건축공사 터파기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 시민옴부즈만은 2021. 1. 11. 신청인 및 관련업체(시행사: 안산사동 90블록 ○○주식회사), 그리고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팀장 및 녹지과 관계자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안산시는 신청인 및 관련업체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연계된 허가사항변경의 인허가(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등)를 득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 시민옴부즈만은 신청인 및 시행사, 하도급업체 등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터파기 공사는 동계기간에 시행되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며, 인접 토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방안을 조속히 협의·처리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다.

(신축공사 중지 관련 현장사진)

● 이와 관련하여 건축디자인과 및 녹지과는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 시민옴부즈만의 조정의견에 따라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신청인도 시민옴부즈만의 조정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2021. 1. 20. 관련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결 론(조정)

● 시민옴부즈만의 조정의견에 따라 주무부서인 건축디자인과 및 녹지과와 신청인 등은 2021. 1. 20. 공사 정상화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 22. 건축디자인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공사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고충민원이 해소되었다.

● 특히 시민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적극적인 조정활동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동계기간 터파기 공사 및 여타 신축공사가 조속히 재개됨에 따라 공사 중지에 따른 피해 예상 사업비(약 200억원)가 절감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이 구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4) 석수골 역세권 준공 지연에 따른 안산메트로타운○○아파트 입주자 및 ◎◎㈜의 민원 해소방안 질의 (의견표명)

(가) 민원 요지

● ◎◎주식회사는 2015. 5. 19.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번지 일원에 주거복합용지 등을 조성하는 석수골역세권개발사업(일반상업지역 43,464.7㎡, 자연녹지지역 31,251.1㎡)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2020. 5. 12.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 도시재생과로부터 공원 공간에 대한 인수인계 부서협의를 받은 공원과는

- ◎◎주식회사는 안산메트로타운○○아파트 분양 당시 달미역 출입구(공원 내)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수직 승강기 설치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승강기 미설치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으로부터 민원 제기를 받자

- 2018. 10. 31. 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과 협의 하에 승강기를 공원 내 편익시설로 설치하고 승강기 및 승강기 부속시설에 대한 소유·관리권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대표회에 있음을 합의하였고

- 이에 따라 안산시는 2018. 10. 31. 이를 고시(안산시고시 제2018-180호)하였다.

● 한편,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구조물(승강기)은 공유재산(공원) 내 설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관련 규정에 따라 점용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 그러나 상기 승강기의 경우, 공원녹지법 상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사권이 설정된 공유재산(공원)을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할 수 없는 법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 승강기 부분 지적 경계조정을 통해 공원부지에서 제척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는 안산시(장애인복지과) 요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준공지연 우려를 이유로 제척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다.

● 공원과는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에 이에 대한 합법·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4조의1 제2호에 철도공원의 근거를 마련한 후, 달미역 출입구(공원 내)를 주제공원(철도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의3에 공원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기반시설(승강기)”를 명시함으로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실시의 시급성

-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3년째 지연되어 입주자의 토지등기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높고,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는 준공검사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해당 사업용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책임을 안산시에 물을 수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된다.

● 승강기 존치의 필요성

- 해당 수직 승강기(엘리베이터)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특히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계단)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수직 승강기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승강시설 부지 공원제척 검토

- 승강기 설치부지(40㎡)를 공원에서 제척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해소되나,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공원)에서 제외되어 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이전됨으로써 시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승강기 설치 부지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수직 승강기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여 일반인들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승강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방안은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부지제척 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등의 추가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나, 사업시행자는 공원 내 설치는 안산시(장애인복지과) 요구사항으로 기 협의 완료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준공지연에 따른 손실을 고려할 때 승강시설 부지 공원제척 검토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 공원과 의견 검토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4조의1 제2호에 철도공원의 근거를 마련한 후, 달미역 출입구(공원 내)를 주제공원(철도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의3에 공원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기반시설(승강기)"를 명시함으로써

△ 이건 수직 승강기에 대한 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판단된다.

● 이건 점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요건

- 2018. 10. 31. 주택과 및 ◎◎주식회사, 도시재생과, 공원과 협의 하에 승강기를 공원 내 편익시설로 설치하고 승강기 및 승강기 부속시설에 대한 소유·관리권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대표회에 있음을 고시(안산시고시 제2018-180호)하였으나

△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담보할 장치(보험계약증 제출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의견표명)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달미역 출입구(공원 내)를 주제공원(철도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 점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행하며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인 공원과는 시민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5)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주차장입구 도로점용허가 요구 (의견표명)

(가) 민원요지

● 신청인은 상록구 부곡동에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주차장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록구청장이 부당하게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종래 상록구 및 단원구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문제없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신청인의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도로점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근거가 있으며 그것이'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주차장 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는 1필지 1개소만 허용되는데도 신청인은 2개소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해당 부지의 경우 20M도로와 6M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 위치하므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 없는 6M도로 방향으로 출입구를 낼 수 있으며, 20M도로 방향으로 차량출입구를 낼 경우 보행자위험 및 교통장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6M 도로 쪽으로만 출입구를 내도록 보완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은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이 건이 그 동안 이루어져 온 다른 도로점용허가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 피신청인이 '1필지 1개소'로만 제한된다고 하는 기준을 주장하나, 그렇게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자체 마련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건축예정 필지 주변의 다른 건축물, 보행도로, 보행인, 차로상황 및 교통량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변 유사조건의 다른 건축의 도로점용 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6M도로와 20M도로 양쪽으로 출입구가 개설된 건물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이 확인되고, 이러한 건축허가가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3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그와 동일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변의 다른 건축물로부터 20M도로 방향으로 이미 주차장 출입구가 개설된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건물에서 신규 출입구가 1개소 추가될 경우 추가되는 보행자의 위험이나 교통장애의 정도가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정도인지에 의문이 있다.

(라) 결 론(의견표명)

● 피신청인이 20M도로쪽 점용허가를 거부할 경우 재량 행사의 하자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를 재검토하여 최종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고충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은 안산시 전체에 적용되는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 전체에 통용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개발제한구역 내 원상복구 시정명령 집행유예 요청 (의견표명)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 소재 ○○화원(개발제한구역)에서 10여년 간 힘들게 화훼 사업을 하면서 5식구(신청인 부부 및 자 3명) 생계를 유지 중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간이 숙소로 사용 중)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기본 수익 창출이 힘들어 월 50만 원 상당의 생계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수억 원의 사채 빚과 금융이자부담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전혀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정기간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시민옴부즈만은 2021. 1. 26. 신청인과 면담 시, 안산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경제적 이유 등을 비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신청인의 화훼 사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당장 이사할 비용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안산시 도시계획과는 시민옴부즈만의 민원 발생 경위 확인요청에 대해 2021. 2. 1.'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제하의 답변서를 통해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신청인은 신길동 △△번지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으로 불법 축조된 건축물에 주거하고 있으며, 안산시에서는 경기도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통보에 따라 2020. 6. 5. 및 2020. 10. 20. 위반사항을 단속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는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특히 비닐하우스는 화재 및 강설 등에 취약한 구조로서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생명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안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도 관련 법 저촉사항을 안산시에 통보하고 있다.
-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으며, 이와 같이 시민의

생명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미 상당한 기간(3개월)의 시정명령 기간을 부여하였다.

- 향후 시정명령 이행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의 행정조치 예정으로 이는 원상복구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 이와관련 시민옴부즈만은 2021. 2. 5. 도시계획과 ◎◎◎주무관을 면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 혹한기인 점 등을 감안,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주무관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영세민들의 고충이 심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내 주거는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확보 등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 중이라고 근황을 소개하고, 시 복지과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안 모색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은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복지주사보)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의 심리적 안정 및 후생복지 차원의 면담과 지원필요성을 강조한 바, ●●●주무관은 신청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희망한다면 공공근로 일자리는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불법건축물 관련사진)

●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2021. 3. 2. 신청인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 안산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내 주거로 인한 화재위험 등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련규정 준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신청인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뜻을 보이면서 시민옴부즈만 및 시 도시계획과,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라) 결 론(의견표명)

● 안산시 도시계획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에 따라 신청인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신청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자살 충동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관련법을 상세 소개 및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권유하는 등 공감행정을 추진하도록 '의견 표명'하였다.

(7) 특정경유자동차 과태료 감면 요청 (의견표명)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신청인 보유 특정경유자동차(경기△△머△△△△) 검사위반 과태료 부과 와 관련, 자동차 검사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적시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체최고액(2,708,100원)을 부과받았다면서, 과태료 취소 혹은 감면을 희망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자동차 검사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적시에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과받은 특정경유자동차 과태료 취소 혹은 감면을 요청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은 2021. 8. 10. 시민옴부즈만과 면담 시,

-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면서, 자동차 검사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 고지서 등을 적시에 전달받았거나, 과태료 체납(할증 금액 등 포함) 등 관련 사전 충분한 고지를 받았다면 민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였고
- 특히 신청인 보유 특정경유자동차(경기△△머△△△△) 검사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 연체최고액(2,708,10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태료 취소 혹은 감면을 희망하였다.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경위 및 적극행정 차원의 향후 처리계획 질의에 대해 전자문서(2021. 8. 18./ 8. 19.)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신청인에게 행정절차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경기△△머△△△△) 관련 과태료 고지서 등 제반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신청인이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원으로
- 우편물 송달 불능으로 인한 사유로 일부 과태료 금액(총액 1,778,100원/검사지연 과태료 중가산금 231,000원, 특정경유자동차 과태료 1,062,000원 및 중가산금 485,100원)을 적극행정 및 공감행정 차원에서 차감할 방침이며,
-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 판결 결정문의 과태료 2건(과태료 총액 : 930,000원/검사지연 과태료 3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과태료 63만원)은 부과 처분함이 정당하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은 시민옴부즈만과의 유선 통화(2021. 8. 20.) 시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및 공감행정 권유, 코로나로 인한 인도적 차원의 시민 권익보호 등 차원에서 신청인의 과태료 차감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결 론(의견표명)

● 시민옴부즈만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및 공감행정'의견표명'을 한데 대해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의견을 수용, 우편물 송달 불능으로 인한 사유로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금액(총액 : 2,708,100원) 중 일부(과태료 중가산금)를 차감 조치(1,778,100원)하였고,

● 신청인 또한 이를 수용하여 차감된 최종 과태료 금액(930,000원/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결정문에 근거)을 납부(2021. 8. 30.)함에 따라 고충민원이 원만히 종결되었으며, 신청인은 그동안 시민옴부즈만의 권익보호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8) 복합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요청 (의견표명)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안산시 내 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시, 안산시에서 사업 적정성 및 예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 요청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안산시가 지역 내 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시,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적극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특정 지역(해양동)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안산시 체육진흥과는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경위 확인요청에 대해 2021. 4. 7. "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제하의 답변서를 통해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체육진흥과는 2021년 1월 개최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미팅(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에서 제기된 "○○동 주민 건의사항(4만여명에 달하는 ○○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요청)과 관련한 객관적 타당성(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산시 상록구 사동 △△번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관련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을 경우, 종합 평가절차(사업의 개요,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의 쟁점, 사업 수요 및 편익·비용 등 경제성 분석, 사업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위험요인 등 정책적 분석)를 거칠 계획이다.

- 특히 공익차원의 예산 절감 및 사업효율성 제고 등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 시, 사업내용을 더욱 구체화함과 동시에 개괄적인 조사와 함께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고
- 공공체육시설 공급현황 및 배후 인구(수요) 등 여건 분석, 복합체육센터 설립 관련 주민설문 등 의향조사, 정책적·경제적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민옴부즈만이 2021. 3. 31. 체육진흥과 ○○○팀장. ◎◎◎주무관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는 ○○동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조사 행위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안산시 감사관실도 2021. 3. 25. 신청인의 관련 민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 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파악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결 론(의견표명)

● 시민옴부즈만은 안산시 체육진흥과 등 유관부서로 하여금 지역 내 복합체육센터(가칭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조사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후보지를 적극 물색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의견표명'하였다.

● 또한, 관련 센터 건립의 적정성(중복 사업 여부 등) 및 공익차원의 예산 효율성도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등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방안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9) 건건동 ○○마을 지역교통망 개선 요청 (의견표명)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수인산업도로가 확장되면서 건건동 용담마을이 고립됨에 따라 마을 진출입도 증가된 차량이동으로 인해 더욱 위험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증대되었다며, 지역교통망 개선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수인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해 마을 도로 진출입 위험이 증대되고, 소음.매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가치도 하락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지역교통망 개선(횡단보도 설치, 위험지역 내 교통신호등 추가설치, 교통안전대책 보완, 지역주민 이주대책 등)을 요청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은 4년여 기간 동안 관련 민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안산시로부터 정확한 대답을 못 듣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해결책 혹은 대안을 요청하였다.

- 안산시 교통정책과 ○○○팀장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횡단보도 설치 건 관련, 이는 교통량 조사에서도 정량분석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속주행 수인산업도로 상의 사고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호제어도 불가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 감사관실 ◎◎◎주무관은 수인산업도로 건설로 인해 신청인 지역 주민들의 횡단보도가 없어짐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 교통시설 관련 개선 검토를 제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건설도로과 ●●●팀장은 신청인 및 지역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 도로 부설 등 지원을 해왔다면서, 횡단보도 개설 시에는 오히려 수인산업도로 상의 고속주행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 위험도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 문의에 대해 교통정책과는 문서(2021. 5. 10.)를 통해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2018년 제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민원과 관련,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심의한 바 있으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유로 인해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 이와관련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지역(용담마을) 내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굴다리 터널 인근지역에서 좌회전 허용 방침이 조건부 가결되어 2021년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굴다리 터널 인근지역에서 용담마을로 좌회전 등 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안산시 건설도로과는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 문의에 대해 문서(2021. 5. 13.)를 통해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18개 지구(70개 노선, 약 23 km)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마을 진출입노선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용담마을 진출입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주민건의. 유선통화. 사무실 및 현장 방문 시 수차례 설명하였다.

- 특히 마을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로 추진관련 민원 등 공식적 요청이 없는 상황이나, 건설도로과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현장 차량진출입 사진)

●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2021. 5. 20. 안산시 교통정책과 ⦿⦿⦿주무관과 면담하여 최근 변화된 민원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감안, 횡단보도 설치 등 관련 교통시설안전심의회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3. 건설도로과 ◐◐◐팀장 등에게는 민원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 민원지역 관할 상록경찰서는"차량이 고속 주행하는 수인산업도로의 교통환경 등을 감안할 때 해당지역 내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라) 결 론(의견표명)

● 시민옴부즈만은 안산시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등 유관부서로 하여금 주민권익 보호 및 교통안전 차원의 관련대책을 해당지역 주민과 수시 소통(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구(민원해결을 위한 One-Stop Service System 가동)토록 '의견표명'하였다.

(10) 불법매설 하수관로 원상복구 요청 (의견표명)

(가) 민원요지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전답(대부동동 △△, ▲▲) 내에 인근 지역의 주택을 공사 중인 건축업자가 신청인과의 협의도 없이 하수관로를 불법 매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수 배출 지역의 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전답 내의 불법 하수관로 매설로 인한 오염(냄새, 벌레 등)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며, 다른 지역주민들도 이와 관련한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은 해당 건축업자의 입장을 계속 변호하는 발언만 하는 등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불만이 많고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다) 피신청인 주장

● 안산시 대부개발과는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 문의'에 대해 "국유지(대부동동 산◇◇◇번지)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를 통해 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국유지(대부동동 산◇◇◇번지)를 점·사용허가를 받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이며, 오수 배출 시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 시민옴부즈만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 8. 19. 신청인과 함께 대부동동 소재 민원 현장을 조사한 바,

- 신청인의 주장대로 하수관로가 불법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 시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해당과 주무관에게 현장을 재답사하여 불법하수관로 철거 방안 등 관련 대안 모색 및 적극행정 전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불법매설 하수관로 현장사진)

● 시민옴부즈만의 ‘사실관계 및 현장확인’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해 대부개발과 주무관은“민원유발 건축주가 당초 공사계획과는 달르게 하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 계획대로 공사를 하도록 행정 지도”하였다.

(마) 결 론(의견표명)

● 시민옴부즈만의 시정권고에 따라 안산시 대부개발과는 민원유발 건축주 및 설계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불법매설 하수관로를 원상 복구토록 행정지도하는 등 적극·현장행정을 강구하였다.

(11)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요청 (의견표명)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토지(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답 △△ 외 3필지)가 안산시의 현황도로 개설 및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인해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농지법 위반 및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300-800 여만 원)을 부당하게 부과하였다면서

● 안산시 관련부서가 현재의 신청인 소유 토지(지목 : 답)를 철도 혹은 대지 등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 주기를 희망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안산시 단원구 민원봉사과는 2021. 11. 2.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 문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산선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바, 신청인 토지가 일제 강점기이후 현재까지 철도역사로 사용한 내역은 없다.
- 현장확인 결과, 신청인 토지(신길동 답 ▲▲▲, ◇◇◇번지)에는 물건 적치 및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기계공업사(◎◎공업)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청인 토지(신길동 답 △△, ◈◈◈)는 나대지로 내버려두고 있다.
- 지목변경은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실제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거나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질변경이 완료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철도용지의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준공되어야 가능하다.

● 안산시 도시계획과는 시민옴부즈만의'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문의에 대해 2021. 11. 5.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경우, 해당 위반면적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현황도로 면적까지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 신청인 지번 지역의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의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용이 불가하다.
- 신청인 지번 인근지역의 사용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이행강제금은 세금과 같이 매년 납부하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여 위반행위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구토록 하는 행정과태료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은 2021. 10. 18. 시민옴부즈만과 면담 시

- 신청인 소유 토지(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답 △△ 외 3필지) 인근 지역에 농업용 수로가 없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로부터 불법건축물 위반 등 명목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약 800만원)을 부과받는 등 부당하고 과다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 안산시 관련부서가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현재의 지목을 철도, 대지 등 여타 용지로 변경해 주는 등 경제적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희망하는 한편,
- 신청인 지번 인근지역의 대다수 토지는 지목이 철도 용지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지목이 변경되지 못할 경우에는 농사를 위한 농업용 수로 개설을 희망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 10. 19. 도시계획과 ○○○주무관과 면담하면서, 신청인 소유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이와 관련 도시계획과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수백만 원 이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납세자보호관 협조)되었다며, 도시계획과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질의함과 동시에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 10. 25. 오전 단원구 민원봉사과 ◎◎◎주무관과 면담한 바,

- 신청인의 민원 처리와 관련, 3차례 이상 면담하고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농업정책과 등)와도 수차 업무 협의를 한 바 있다면서,
-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절차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 농지전용허가, 공사 준공 등을 받을 경우 지목변경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은 같은 해 11. 15. 도시계획과 ●●●주무관에게 민원인의 이행강제금부과 내역 및 민원처리 계획에 대해 문의한 바,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는「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 토지소유주 및 임차인, 불법행위자 등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번 민원과 관련, 토지소유주가 앞으로 불법건축물의 영구적 원상복구를 약속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이 같은 해 11. 15. 오후 민원 현장을 조사한 바, 불법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은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면 불법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불법건축물 사진)

●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같은 해 11. 23 도시계획과, 단원구청의 업무처리담당자 4명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 도시계획과 ◎◎◎ 팀장은 민원인의 지목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청 지목팀에서 철도, 대지, 잡종지 등 여타 지목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견에 따라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 단원구청 ◐◐◐팀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이전에 신청인 토지 내에 건축물이 존재한 자료(건축물대장 등)가 있다면 현실에 부합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와 관련, 신청인은 같은 해 11. 26. 시민옴부즈만에게 관련 건축물대장(신길동 답 ▲▲▲)을 힘들게 찾았다면서 "1970년 당시, 신청인 소유 토지 내에 건축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공해 온 바, 시민옴부즈만은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와 공유하면서 지목변경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였다.

●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민원처리 관련 여타 유관부서 의견을 청취한 바, 같은 해 12. 8. 농업정책과 ◑◑◑주무관이 "신청인 소유 토지가 농지전용분담금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해 옴에 따라 도시계획과 및 민원봉사과와 관련 상황을 공유하였다.

* 신청인은 2020. 2. 5.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신청인 소유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민원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시민옴부즈만은 같은 해 12. 7. 도시계획과 와 단원구 민원봉사과 업무처리 담당자들과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적극 행정을 요청하였다.

- 이와 관련 도시계획과 ◎◎◎주무관은 신청인의 토지 내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건축물이 완전 철거된 뒤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단원구 민원봉사과 ▣▣▣주무관은 형질변경 등 행위가 끝나면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결 론(의견표명)

● 시민옴부즈만은 ① 신청인 소유 토지(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답 △△ 외 3필지)가 안산시의 현황도로 개설 및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십년 간 농경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인데다 인근 대다수 지역이 철도 지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2020. 2. 5.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신청인 지번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③ 개발제한구역법 시행이전인 1970년 당시, 신청인 지번 지역에 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건축물대장이 확인된 점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국토교통부 발간 토지이동 업무편람(2011년) 등에 따라 시민들의 권익 구제 차원에서 신청인의 지목 변경신청을 현실적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수용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의견표명'하였다.

(12) 재건축 동의 철회의 효력에 대한 관원질의 철회 및 조속 회신 요구 (의견표명)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재건축조합 설립승인신청 등 관련자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으나, 그 이행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장(직무대행)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동 자료는 피신청인 안산시장이 조합설립승인신청 자료로 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당사자인 신청인 등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의 규정은 이해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근본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며

● 피신청인 안산시장은 동 추진위원회(직무대행)의 관련자료 공개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이행을 독촉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자료 미공개 행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피신청인 안산시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임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함으로써 민원 제기의 근본 목적인 관련자료의 공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한편,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 제5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서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고충민원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장(또는 직무대행)이 설립승인 신청 준비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된 자료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위법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는 그 흠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의견표명)

● 이와 같이 승인신청 서류 등 준비과정에서 중대한 흠이 관련된 신청 행위에 대하여는 그 승인권한을 가진 피신청인 안산시장이 우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위법상태의 해소를 요구하고, 해당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 검토 중단 또는 반려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무자가 스스로 위법상태를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심의안내(상담종결) 사례

(1) 월피동 관내 자동차정류장 용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상담종결)

(가) 민원 요지

● ○○주식회사(대표이사 ☆☆☆)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 잡종지에 자동차관련시설(건축물 2개동, 연면적 543.5㎡)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 이건 건축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련시설(건축물 2개동, 연면적 543.5㎡)이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하였다.

● 또한 경기도 안산시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터미널 기준 충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새로이 받는 등 관계 법령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주식회사는 이건 건축허가신청서를 취하한 후 재신청하였다.

(나) ○○주식회사 자동차정류장 인허가 경위

●1985. 9. 17. 건설부 고시(제1985-399호)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

● 2021. 7. 22. 상록구에서 건축조건부허가

● 2021. 5. 21. 상록구에서 자동차정류장 제33조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자료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

(다) 법률 검토

● 이건 건축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련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부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따르면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건 시설이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개정 전의 규칙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84. 11. 15. 건설부령 제376호) 제19조(자동차정류장의 종류) 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자동차정류장법 제3조 각호의 규정[6]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뻐스정류장'은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된다.

---

6) 제3조 (종류) 자동차정류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자동차정류장(專用自動車停留場 이외의 自動車停留場)
2. 전용자동차정류장(自動車運送事業者가 當該 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3. 뻐스정류장(뻐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4. 트럭정류장(路線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84. 11. 15. 건설부령 제376호) 제21조(자동차정류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이건 고중민원 시설은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는 상담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건 자동차시설관련 민원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 「자동차운수사업법」(1982. 4. 1. 법률 제3513호)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민원회사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8. 6. 14. 법률 제5448호) 부칙 제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민원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라) 결 론(상담종결)

● 따라서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에서 이건 건축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련시설이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고

● 안산시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것은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상담의견을 제시하였고

● 해당 부서에서는 2021. 7. 22. 민원 회사에 건축 조건부허가(신축) 처리하였다.

(2) ○○아파트단지 내 자동차 소음 공해 해소 요청 (상담종결)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2021. 6. 11.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신각길 △△, 신길온천역○○○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소음 공해 해소를 요청하였다.

(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자동차소음으로 인해 한여름에도 거실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산시 관련부서에서 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차음벽 설치 등 대안 모색을 요청하였다.

● 안산시 건설도로과는 2021. 7. 7.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경위 확인요청에 대한 "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 답변서를 통해 아래입장을 표명하였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일 경우,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민원인 세대 앞의 중앙대로(광로 3-10호선), 새뿔길(소로 1-1호선)은 민원인 단지의 허가일 이전 집행완료된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다.

- 안산시는 향후 도로의 확장이나 연결도로의 개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소음기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시민옴부즈만은 2021. 6. 28. 신청인 거주 아파트를 방문하여 거실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바, 「환경정책기본법」소음기준치(65데시벨) 이하(실외소음 : 61.9데시벨, 실내소음 : 51.4데시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안산시 관련부서에서도 2021. 7. 6.민원인 거주단지에서 소음 측정을 별도 실시한 바,「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65데시빌) 이하로 측정되었고, 민원인이 제기한 자동차소음 문제는 인근 철도교통소음 및 민원인 세대 앞 골프연습장의 타격음으로 인한 소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민옴부즈만은 2021. 7. 19. 신청인을 통해서도 소음치를 객관적으로 재확인한 바, 신청인이 일정기간 개인앱으로 직접 측정한 소음치도 평균 60데시벨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결 론(상담종결)

● 안산시 관련부서의 소음현장 측정 결과가 「환경정책기본법」의소음기준치(65데시벨) 이하(실내 최저 38.6데시벨, 실외최고 62.1데시벨)로 최종 확인되어 민원 종결 조치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은 안산시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등 유관부서로 하여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유사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확인 및 적극행정(근원적 민원 해결을 위한 One-Stop Service System 가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통보하였다.

(3) 주택재건축조합 위법 운영 중지요청 (상담종결)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신청인이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 ◎◎◎주택재건축조합이 위법 운영되고 있어, 참여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 안산시 관련부서가 이와 같은 위법운영 재건축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이의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 조치를 함으로써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조합이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 주장

● 안산시 관련부서가 위법운영 재건축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은 2021. 9. 13. 시민옴부즈만과 면담 시, 안산시 ◎◎◎주택재건축조합의 위법 운영(절차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조합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안산시 관련부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위법운영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기능을 강화, 선량한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 부담 등 경제적 피해 예방을 희망하였다.

● 시민옴부즈만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 9. 14. 주택과 ○○○주무관과 면담한 바, ○○○주무

관은 조합에 대한 현장조사도 수차례 하면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령 준수를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향후 행정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 한편. 안산시 주택과는 시민옴부즈만의 '민원발생 명세 및 향후 처리계획'문의에 대해 문서(2021. 9. 27.)를 통해 아래 입장을 표명하였다.

- 2021. 6. 25.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총무이사가 해임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21. 7. 8. 조합장 선임 후 시공사 선정 등 주요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다.

-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21. 7.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제111조에 따라 시정명령하였고,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8조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 조합 임원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라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14조 제8항에 따라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5항,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정관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접수 이후 관련서류를 검토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조합운영 관련 상세자료 미공개 민원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조합에서 제출한 의견제출서 검토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정비용역업체인 ◎◎개발정비업체의 위법적 대의원회 참여 및 일방적인 조합운영 민원과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로서 대의원회 참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운영은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된다.

●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같은 해 10. 26. ○○○주무관에게 추가 민원예방 차원에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재요청한 바, ○○○주무관은 "현 조합장에게 투명한 조합운영을 하도록 수차 강조하고 있다. 추가 민원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안별로 문제제기를 해주면 적극행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결 론(상담종결)

● 시민옴부즈만은 안산시 주택과에 대해 시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민원대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행정지도(조합운영 관련 관계법령 및 적법 절차 준수, 투명한 조합 운영 등)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현장실사 등 적극행정 전개)토록 요청하고'상담종결'하였다.

다. 기각 사례

(1)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불충분 시정요구 (기각)

(가) 민원요지

● 신청인이 1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다가구 원룸에서 중도해지하고 이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였다.

● 그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였으므로 관할 상록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부당개입을 시정하고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상록구청장은 부동산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공제부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적인 계약관계로서 피신청인이 개입할 수 없고, 중개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개입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검토 결과, 임대 보증금 중 공제금액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책정되어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의 지도·감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정산에 참여한 부분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상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라) 결 론(기각)

● 피신청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신청인) 사이의 보증금 정산이나 그 과정에서의 중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2) 옥외 간판 감독소홀 및 소음으로 인한 이명 등 피해 배상요구 (기각)

(가) 민원요지

● 신청인이 거주하던 다가구 원룸의 이웃 건물에 위치한 자동차부품공장의 소음으로 이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동 공장이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냉난방전문점'간판을 걸고 운영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이명 등의 피해(이사비용 등)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면서 조사 구제를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상록구청장은, 간판의 경우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오기 전 다른 사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이미 철거조치를 완료 하였다고 주장한다.

● 소음의 경우 신청인이 이미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나온 상황이어서 측정을 할 수 없었으나, 현 사업주에게 소음 민원이 있음을 전달하고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에게 이명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병원진단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명발생 사실의 확인이 불가하였다.
- 신청인이 문제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냉난방전문점' 간판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현사업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소음을 감추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신청인이 이미 철거조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었다.
-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명피해 자체와 그 이명피해와 소음과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

(라) 결 론(기각)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명발생사실, 이명과 소음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간판도 현 사업주의 간판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취소 요구 (기각)

(가) 민원요지

- 신청인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연 1회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 2019년도분 교육 미이수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신청인의 교육 미이수는 피신청인 안산시장이 교육의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안산시장은 신청인의 교육이수의무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려왔다고 주장한다.
-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와 본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후 10일의 의견제출기간, 본통지 후 60일의 이의제기 기간 등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나, 그 때에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이「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연 1회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 2019년도에 이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 안산시장은 교육안내공문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등기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음이 문서 발송기록으로 확인되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의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와 과태료 부과처분 본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두 개의 통지 문서를 신청인 본인이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과태료부과 처분 본 통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그 처분에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결 론(기각)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의 충분한 기회도 있었으나 신청인이 아무런 의견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대한 불가피한 사유 또한 찾을 수 없다.

(4) 무주택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 기준 변경 요구 (기각)

(가) 민원요지

● 안산시가 2021년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2020년도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하던 것을 일정기간 신청을 받고 배점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 우선순위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배점 기준 중 하나로 저연령자를 우대하도록 불합리하게 정함으로써 신청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의 기준에 부적격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은 안산시에서 동 사업을 공고할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선정과정에서 적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선정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지원 대상 자격 범위는 2021년도와 2020년도가 같으나, 선착순 방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2021년도에는 일정기간에 신청을 받되 안산시 시정 방침(젊은 인구 유치)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 신청 접수 결과, 총 562명이 신청하여 329명이 선정(233명 탈락)되었고, 신청인은 배점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순위에 들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주거복지법」 및「안산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는 사업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시행 방식이나 선정기준에 대한 특별한 명시규정은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 안산시장이 사업 시행 시기마다의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및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양, 군포 등 인근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

● 한편, 배점기준표에서 저연령 층을 우대하도록 기준을 정한 부분의 경우, 피신청인 안산시 시정방침의 첫 번째 항목이“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공유도시”이고, 안산시 의회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안산시에 올 수 있게끔"하라는 발언(2020. 6. 12. 제26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산시 정책 방향과 부합하므로 이 기준이 번복되어야 할 만큼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른 한편,'분양권'보유자를'무주택'요건 부적격자로 처리한 부분의 경우, 모집 공고문에는 그러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부터 부적격임을 알았더라면 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던 지원자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공고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실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원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에 대하여만 부당하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기각 및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지원방식 변경 또는 우선순위 선정 배점에 특별한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기준 적용에서도 특정 신청자를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피신청인 안산시장이 어떤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지원 자격 또는 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대외 공고 시 일반인이 알기 쉽게 명확히 알리도록 함으로써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원 소지를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5) 재건축 동의 철회의 효력에 대한 관원질의 철회 및 조속 회신요구 (기각)

(가) 민원요지

● 신청인 등은 재건축조합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조합설립총회에서 동의서 제출 당시와 다른 내용의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안산시장에게 그 동의철회서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상급기관에 관원질의를 하는 등 회신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관원질의를 철회하고 조속히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재건축추진 동의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피신청인이 한 관원질의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규정에 대한 해석이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명확한 것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확인결과,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받은 법률전문가의 자문 의견이 나뉘어 있는 등 하나의 명확한 해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그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 론(기각)

● 피신청인의 관원질의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동의철회의 효과는 해당 상급기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V

부 록

1. 시민옴부즈만 홍보 현황
2. 시민옴부즈만 활동 현황

Ⅴ. 부 록

1. 시민옴부즈만 홍보 현황

〈안산시청〉 시민옴부즈만 홍보현황 자료(2021. 5. 28. 안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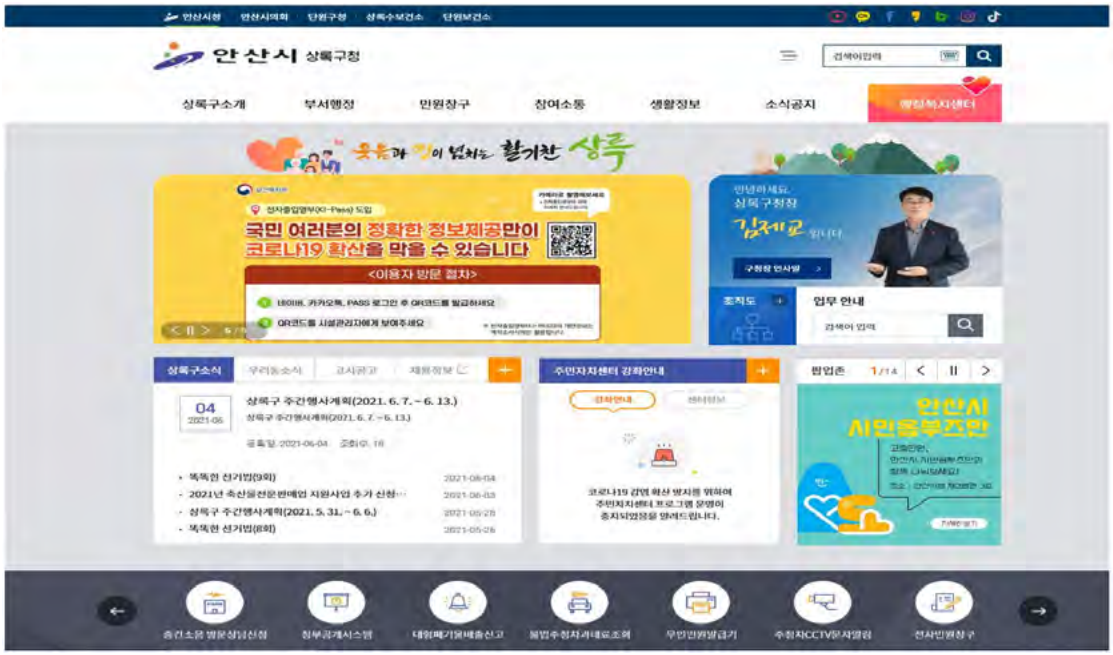

〈상록구청〉

〈단원구청〉

2. 시민옴부즈만 활동 현황

(2020년 고충민원 처리 운영상황 보고, 2021. 2. 24. 안산시장실)

(2021년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2021. 3. 18. 한국프레스센터)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 2021. 5. 14.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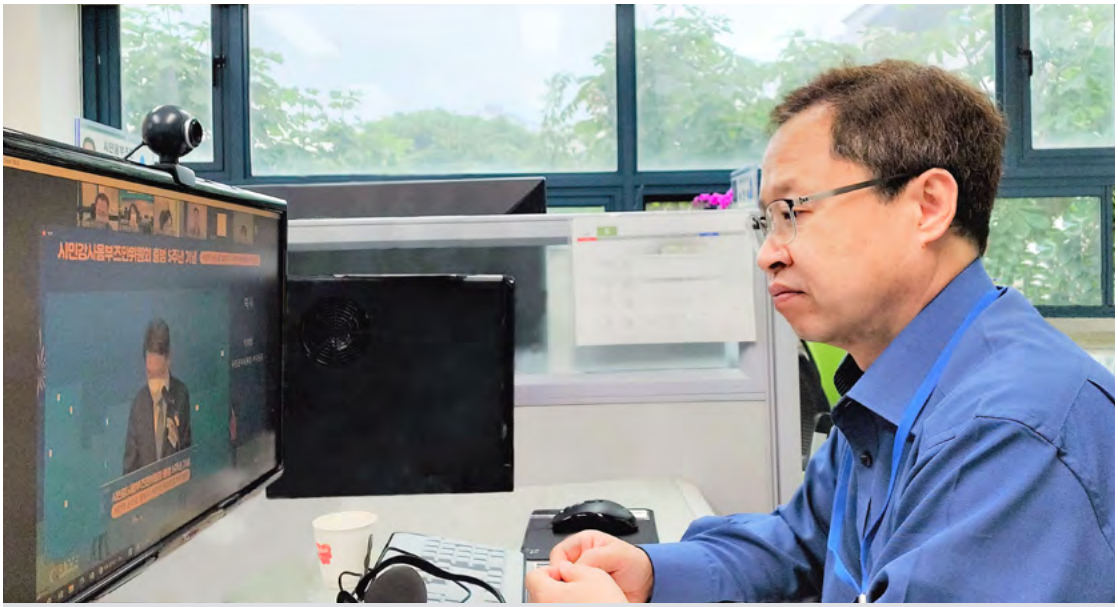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참석, 2021. 5. 21.)

(하남시 시민옴부즈만 대상 홍보활동, 2021. 8. 11. 하남시청)

(2021년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행사, 2021. 12. 1. 정부세종청사)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서 권익위원장과 함께 시민옴부즈만 활동 격려 사진, 2021. 12. 1.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시흥시 현장활동 참여, 2021. 12. 16.)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의장, 시흥시 호민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등과 업무 협의, 2021. 12. 16.)

Ⅵ

관련 규정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안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Ⅵ. 관련 규정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19.11.08 조례 제2317호
(일부개정) 2021.11.10 조례 제2569호
(일부개정) 2022.01.05 조례 제25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 ·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 처리 및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안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10.〉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 옴부즈만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직무 대상기관) 옴부즈만의 직무 대상기관은 제2조제3호의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 공무원 〈신설 2022.1.5.〉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 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않는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하여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21.11.10.〉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등)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1.10.〉

제1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안산시 옴부즈만으로 신규위촉 (연임은 제외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정) 2020.01.29 규칙 제12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방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위촉한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조례 제12조의 추천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추천위원회는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들 중에서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한다.

1. 안산시의회
2. 변호사협회
3.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의 총장
4. 시민사회단체
5. 인사업무 담당국장 또는 옴부즈만 담당 부서의 장

제3조(근무일수 및 회의소집) ①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 20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근무일을 별도로 정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매주 1회 정기회의 개최일을 별도로 정한다.

제4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옴부즈만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이 간사가 된다.

③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소관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다.

④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하며,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서의 경정(更正)

① 대표옴부즈만은 제5조제5항에 따른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를 경정할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옴부즈만의 기피 · 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④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옴부즈만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대표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 · 규칙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문기구로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옴부즈만이 위원장이 된다.
③ 옴부즈만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⑦ 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6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⑧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실시의 통보)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제외 등 통지)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등재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통보) 대표옴부즈만은 제20조제2항에서 결정된 내용을 해당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합의 권고 및 조정) 고충민원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결과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등이 수용하지 않은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지원업무) 제18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활동 등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활동비 지원) 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지급기준은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23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비밀유지 서약) 옴부즈만등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안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안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지방자치법」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처분 등"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 처분 등"이란 「지방공무원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서 정한 징계와 제14조에 따른 경고·훈계·주의 등의 처분을 말한다.〈개정 2016.10.17.〉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안산시 및 그 소속 기관·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주의 처분을 말한다.〈개정 2016.10.17.〉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제4조(면책대상) 이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은 안산시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삭제 2020.3.18.〉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삭제 2020.3.18.〉
3. 〈삭제 2020.3.18.〉

4. 〈삭제 2020.3.18.〉

5.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신설 2020.3.18.〉

③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항신설 2020.3.18.〕

④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항신설 2020.3.18.〕

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 ·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20.8.26.〕

제6조(면책대상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면책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면책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17.〉

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 중 인사·회계·법무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중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심의회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0.17.〉

③ 심의회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9.29.〉

④ 삭제 〈2016.10.16.〉

제9조(면책제도의 안내) 감사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감사개시 전 또는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제10조(면책심사의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의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제11조(면책심사의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0조에 따른 면책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단서삭제〈2016.10.17.〉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양정을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의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의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의 대상은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개정 2016.10.17.〉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해당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의는 훈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0.17.〉

제15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및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포상 등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0.17.〉

제16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예규 및 규칙 등을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에서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때
8.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제목개정 2016.10.17.〉

제17조(경고 등 처분권자)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고 등 처분의 대상자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임용권한의 범위 밖에 있어 처분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7.〉

제18조(경고 등 처분의 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제목개정 2016.10.17.〉

제19조(기록의 유지) 시장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 받은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0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 ·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삭제 〈2021. 5. 18.〉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 ·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 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 · 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 ·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 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⑥ 제5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 ·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 자료의 제출, 사실 · 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 · 단체 · 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 · 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 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 · 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 회계 · 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

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 · 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 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 ·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 ·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6조 삭제 〈2021. 5. 18.〉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 · 자료의 제출, 사실 · 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 ·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부칙 〈제17806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 ·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 · 법령 ·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 ·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 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 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 · 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 ·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 ·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개정 2018. 1. 30.〉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 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 · 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 · 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 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 · 접수 · 분류 ·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 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 ·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위원의 기피 · 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1. 행정 · 교육 · 문화 · 복지 · 노동 · 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 · 농림 · 수산 · 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 · 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 · 병무 · 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 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 · 기피 · 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 · 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 조사 · 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 · 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 · 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 ·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 · 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 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 · 참고인 · 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삭제 〈2019. 10. 1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 · 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사 · 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 · 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 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 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 · 처리절차 ·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 · 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 · 일시 · 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 · 계급 및 군번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 · 내용 · 일시 ·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 · 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 · 사람 · 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 · 성명 ·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 · 진술
4. 그 밖에 확인 ·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 · 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근무처 · 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 고소 ·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 · 처리해야 한다.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전단"은 "제59조제2항 전단"으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는 "그 처리결과"로, "직접 이첩 받은"은 "송부받은"으로 본다.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 ·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에서 같다)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 · 자료의 제출, 사실 · 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 · 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 · 전출 · 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 ·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 ·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 · 증언자 · 고소인 · 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 · 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2019. 10. 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③ 삭제 〈2019. 10. 15.〉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삭제 〈2019. 10. 15.〉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 입원 · 투약 ·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 파견근무 · 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 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제78조 중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본다.

제7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 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 삭제 〈2019. 10. 15.〉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 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 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 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 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 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 · 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 ·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 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 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기관 및 징계종류 · 징계사유 · 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 · 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 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 · 처리 ·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제9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 · 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㊾까지 생략

2021년

안산시시민옴부즈만
운 영 상 황 보 고 서

발행인 시민옴부즈만

발행일 2022. 2.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전 화 031) 481-2682(대표전화)